

연구비 지원 지출규정

2004년 6월 30일 정기총회에서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 과학철학회의 이름으로(한국 철학회 직인을 찍은 서류를 통해) 행해지는, 연구비(번역지원비, 저술지원비 포함) 지원과 관리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자격)

본 학회의 이름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 ① 지원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의 회비나 영구회비를 납부한 본 학회 회원.
- ② 연구비 지원자의 연구계획 시행과 연구비 지출을 감독할 수 있는 본 학회 회원 대학 전임 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이전에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제재나 별칙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3조(지원절차)

① 연구비 지원 기관이 정한 양식대로 지원 서류를 구비 한 후, 추천 교수의 동의를 받아 본 학회 연구이사에게 신청한다. 신청기일이 시급할 경우에는 구두로 동의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② 연구이사는 신청을 받은 즉시, 이메일이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이사진들의 찬성의견을 물으며, 이후 회장의 최종통보에 의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제4조(예산 실행 예산서 제출)

연구비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비 실행 예산서를 작성하여 추천 교수에게 제출, 서명 승인을 받는다.

제5조(중앙관리)

- ① 연구비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추천교수의 추천에 의해 본 학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지원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는 본 학회의 명의로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기관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제6조(간접연구비와 인건비 공제)

①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간접연구비를 공제한다. 지원기관의 연구비 관리 지침에 의해 별도의 간접 연구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구비 중앙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한다.

② 간접연구비와 인건비 공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 ① 연구자는 지원기관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러한 책임과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연구자가 감수하며, 학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 ② 연구 결과가 학술논문일 경우에 본 학회의 학술지「과학 철학」이나 국외의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해야 한다.
- ③ 연구가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관리지침에 따른 연구비 정산서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 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본 학회 연구이사에게 통보한다.

제8조(규정개정)

본 규정은 정기총회에서의 의결에 의해 제정되며, 이후 개정은 이사회에서 행한다.